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주민들의 자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어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관내 거주 20세이상 주민수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청구인수의 기준이 매년 인구증감에 따른 청구인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적지않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감사청구인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내 거주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300분의1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민감사 청구인수의 기준을 “관내 거주 20세이상 주민 200명이상”으로 개정함 (안 제2조)

3. 관련법령 및 조례

가. 지방자치법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나. 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4. 검토의견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우리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리구에 주소를 둔 20세이상 주민으로서 우리구 조례로 정한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

-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우리구 관내 거주하는 20세이상 주민 총수 (2002. 4월말 현재 : 276,611명)의 300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는 조례 내용을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완화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 주민들의 자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 맞게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어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 청구인수를 20세이상 “주민수의 비율”로 정함에 따라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이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므로 일정 “민원수”로 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고
- 또한 시내 다른구의 개정내용도 우리구와 같이 200명이상으로 정하여 개정 추진하고 있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함

2002. 5.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삼립